

의안번호	2212026
의 퇴 인	민병덕 의원
회 답 일	2025.10.22.
추계번호	25E408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5조의2(채무면제이익의 이월결손금 보전) 신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업자의 채무를 면제·소멸하여 줌으로써 발생한 부채의 감소액이 있는 경우 해당 부채의 감소액은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도록 하고,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서 제외하도록 함	
2	안 제50조(기본공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받은 경우 연 150만원 한도 내에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금액에서 제외함을 기존 법령에 추가	
3	안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무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추가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5조의2(채무면제이익의 이월결손금 보전) 신설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50조(기본공제)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안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국가가 사업자의 채무를 면제해줌으로써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고, 충당한 이월결손금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서 제외하도록 함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를 위해서는 향후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에 어려움이 있어 세수효과 추계가 곤란

- 국가가 사업자의 채무를 면제해줌으로써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도록 하되,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세수 증가가 예상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무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기본공제대상금액에서 차감함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를 위해서는 향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
에 어려움이 있어 세수효과 추계가 곤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무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기본공제대상금액에서 차감하도록 함으로써 소득세수의 증가가 예상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강민지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민지	02-6788-4746	min1231@assembly.go.kr